
2023년 중견기업 규제 및 애로 개선 과제 100선

2022. 12.

2023년 중견기업 규제 및 애로 개선 과제 100선

국무조정실

No.	과제명	관련법령	주요내용	소관부처	비고
1	규제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행정규제 기본법	(현황) 역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오히려 신설·강화 규제의 증가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만 가중 (건의) 규제 신설·강화 억제 및 규제 품질 제고를 위한 규제비용총량제 법제화 추진	국조실	
2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형벌 합리화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등	(현황) 행정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법상 의무 이행 확보수단으로 행정제재 뿐만 아니라 형벌까지 부과하여 국민 또는 기업을 잠재적 처벌 대상으로 취급 (건의) 국민 및 기업의 경제활동 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형벌 합리화 -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의 경우 과태료로 전환 - 양벌규정에서 인신구속에 해당하는 징역형 폐지 - 중업원의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 의무를 다한 경우 CEO 형사처벌 폐지	국조실	
3	행정조사기본법 적용 대상 확대 및 피조사자 보호 강화	행정조사 기본법	(현황) 행정조사로 인한 피조사자의 부담 및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조사기본법을 제정('07년)하여 시행 중이나 준수사적·사법적 성격의 국세청·금융위·공정위 등의 행정조사는 기업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음에도 행정조사기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건의) 행정조사기본법 적용 대상을 조세·금융·감독·공정거래 분야로 확대하고, 피조사자 보호 강화를 위해 조사권 남용에 대한 벌칙 도입	국조실	

기획재정부

No.	과제명	관련법령	주요내용	소관부처	비고
1	법인세 인하	법인세법	(현황) 세계 각국은 법인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구간을 단일화하는 추세이지만 한국의 법인세는 '18년부터 3천억원 초과 과세표준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 25%(22년 개정세법 24%)를 부과하는 등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독려 필요 (건의) 법인세율 인하	기재부	핵심 과제

2	조특법 시행령상 중견기업 범위 기준 개선	조세특례 제한법	<p>(현황) 조특법상 세제지원은 기업 규모별(대·중견·중소)로 차등적용하고 있으며, 중견기업 구간은 매출 3천억원 미만(R&D 세액공제는 5천억원 미만)으로 제한. 이는 3천억원 이상 중견기업의 세부담을 증대시키고 성장 저해와 성장사다리 단절을 유발</p> <p>(건의) 중견기업 구간을 3천억원 미만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p>	기재부	핵심 과제
3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제지원 확대	조세특례 제한법	<p>(현황) 중견기업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인해 설비투자과 고용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R&D 투자를 하고 있으나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은 5천억원 미만으로 제한되고, 공제율(당기분)*은 연차별로 축소</p> <p>*공제율(당기분): 중소 25%, 중견 8~15%, 대기업 0~2%</p> <p>(건의) (1안) 기업규모 관계없이 전체기업에 세액 공제율 25% 적용, (2안) 중견기업 공제대상 확대 (5천억원 미만→2조원 미만) 및 당기분 방식 공제율 상향*</p> <p>* 중소 25%, 중견 8~15%→13~20%, 대기업 2%→7%</p>	기재부	핵심 과제
4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세액공제 중견기업 대상 확대	조세특례 제한법	<p>(현황) 기업이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비용을 지출한 경우 투자금액의 중소 30~40%, 중견 25~40%, 대기업 20~3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으나, 중견기업 대상이 5천억원 미만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제한</p> <p>(건의) 중견기업 대상 5천억원 미만 코스닥 상장 기업→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p>	기재부	핵심 과제
5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조세특례 제한법	<p>(현황) 수요부진, 불확실한 경기전망 등으로 인해 중견기업의 설비투자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로 투자 유인책이 시급하나, 통합투자세액공제 개편 (20년) 이후 중소·중견기업의 공제율 격차는 증가 (7%)하는 등 오히려 지원절벽이 심화됨</p> <p>(건의)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p> <p>*(일반) 중소 10%, 중견 3%→7%, 대기업 1%→3% (신성장) 중소 12% 중견 5%→9%, 대기업 3%→5%</p>	기재부	핵심 과제
6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	조세특례 제한법	<p>(현황) 기업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수 인재 영입이 필수적이거나 초기 중견기업(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임금수준은 대기업 대졸 초임의 2/3 수준에 불과하고 제조업 기피현상, 인지도 부족 등으로 구인이 어려운 상황. 구직자의 중견기업 취업 유인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p> <p>(건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초기 중견기업(매출 3천억원 미만)까지 확대</p> <p>*청년 취업자 5년간 소득세의 90% 감면</p>	기재부	핵심 과제
7	최저한세제도 개선	조세특례 제한법	<p>(현황)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최저한세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R&D 세액공제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공제금액이 축소되는 등 중견기업의 조세부담 가중.</p> <p>*중소 7% 중견 1~3년차 8%, 4~5년차 9% 그 외 기업 10~17%</p> <p>(건의) ①중견기업 최저한세를 폐지하거나 최저한세율 인하, ②중견·대기업의 R&D세액공제를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p>	기재부	

8	지역자원시설세 폐지	지방세법	<p>(현황) 지역자원 보호, 안전관리·환경보호·주민 생활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자원 확보 등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동일 과세 대상*에 각종 제세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중복과세로 불합리</p> <p>*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및 원자력화력발전 등 특정자원과 특정시설 등</p> <p>**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기후환경요금 등</p> <p>(건의) 지역자원시설세를 폐지하거나 과세대상 확대 및 세율 인상 신중 검토</p>	기재부 행안부	
9	상속세 인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	<p>(현황)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 세계 2위 수준. 그러나 세계 각국은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추세</p> <p>(건의) 직계가족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OECD 평균 15%) 또는 자본이득세(승계취득가액 과세) 도입</p>	기재부	핵심 과제
10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 및 사후관리요건 완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p>(현황)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계속기업으로의 성장이 어려운 상황이나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적용대상, 공제한도 및 업종 변경 제한 등의 제약이 많아 활용도가 낮음</p> <p>(건의) ①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②사후 업종유지 요건 폐지</p> <p>*[대상] 매출 5천억원 미만→전체 중견기업 [한도] 최대 6백억원→1천억원</p>	기재부	핵심 과제
11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 확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p>(현황) 서비스업의 경우 중분류, 세분류 등으로 업종을 세분화하여 한정된 업종만을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 포함</p> <p>(건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p> <p>*제외 업종만 별도 규정</p>	기재부	핵심 과제
12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p>(현황) 기업승계 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20%를 할증평가(중소 및 일부 중견 제외) 하여 상속세 부과. 이에 따른 상속세 실효세율은 60%로 세계 최고 수준</p> <p>(건의)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폐지</p>	기재부	핵심 과제
13	연부연납 시 비상장 주식의 납세담보 허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국세징수법	<p>(현황) 납세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상속세 연부연납을 허용하고 있으나 비상장주식은 담보에서 제외돼 비상장사는 상속세 납부의 어려움 가중</p> <p>(건의) 기업승계 시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한 상속세 연부연납 허용</p>	기재부	핵심 과제
14	가업상속공제 적용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폐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p>(현황)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게 되는 경우 상속시점에 이연받은 상속세에 대해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어 '공제'가 아닌 '과세이연' 효과에 불과</p> <p>(건의) 가업상속공제 자산 양도 시 취득 시점을 상속받은 시점으로 판단</p>	기재부	

15	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현황) 중견기업 대다수가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을 추진하고 있으나 활용 가능한 지원책은 매우 제한적이며, 대다수 과세특례 제도가 일몰 예정으로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지원축소 우려 (건의) 신산업 진출 사업재편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과세특례 상시화 등)	기재부, 산업부	
16	세무조사 절차 합리화	국세기본법	(현황) 정부는 기업의 회계 성실도 분석을 통해 세무조사 대상기업을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선정기준과 절차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아 납세자의 불편 가중. 또한 국세와 지방세는 동일한 세원과 과세표준을 토대로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국세청과 지자체가 각각 세무조사를 진행할 경우 중복조사로 인한 기업 부담 가중 (건의) 세무조사 선정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방법인 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 주체를 국세청으로 단일화	기재부, 국세청	
17	단순가공식료품 제조기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제외	부가가치 세법	(현황) 정부는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하여 물가 안정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량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는 기업의 경우 매입세액불공제분(안분비율) 증가로 오히려 기업 세부담 증가 (건의) 대량생산 설비를 갖추고 단순가공식료품을 취급하는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제외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No.	과제명	관련법령	주요내용	소관 부처	비 고
1	중견기업특별법 상시화 추진	중견기업법	(현황) 중견기업법 일몰('24.7월)이 도래함에 따라 상시법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중견기업 육성 기반 구축 필요 *중견기업법 일부개정안 산중위 계류중(김상훈 의원, 정일영 의원) (건의) 중견기업법 한시적 규정 삭제	산업부	핵심 과제
2	중견기업 육성정책 대상 확대	중견기업법	(현황) 중견기업 정책은 초기 중견기업의 성장부담 완화에 집중하고 있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에는 한계 (건의) 중견기업 육성정책 지원 대상을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거나 매출액 1조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	산업부	
3	중견기업 도약지원펀드 조성을 위한 정부재정출자	-	(현황) 중견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신성장 동력을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지만 자체 역량만으로 한계가 있음. 정부가 운영하는 정책 펀드는 대부분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중점 되어 있고, 민간 펀드 대부분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음. 중견기업의 산업생태계 강화와 중소·벤처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중견기업 전용 정책펀드 조성 절실 (건의) 중견기업 도약지원펀드 조성을 위한 정부 재정출자 적극 검토	산업부	

4	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 인수 시 중견기업 편입 제외	-	(현황) 중견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할 경우 중견기업으로 편입(3년간 중소기업 유예 적용) (건의) 중견기업이 신사업 투자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한 경우 10년간 중견기업 편입 제외	산업부 중기부	
5	국내복귀(유턴) 기업 지원 확대	해외진출 복귀법	(현황)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위해 '13년부터 유턴기업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유턴기업 인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혜택이 부족 - 유턴 초기 투자 비용은 많고 소득은 거의 발생하지 않아 법인세 감면기간 내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어려움 - 수도권 내 유턴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입지 규제로 인해 공장 신증설이 어려워 유턴 수요와 입지 지역 간 불일치 발생 (건의) ①유턴기업 인정요건 완화, ②법인세 감면기간 확대, ③유턴기업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 완화	산업부	
6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 기존 공장증설 규제 완화	산업집적법	(현황)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은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이 제한*되고, 기존공장에 대한 증설도 불가하여 투자를 포기하거나 해외로 공장 이전 * 첨단업종에 한해 제한적으로 가능 (건의)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에 대해 기존 공장 증설 허용 등 한시적 규제 완화	산업부	
7	산업단지 입주제한 완화	산업집적법, 물환경 보전법	(현황)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사항과 관계없이 폐수가 발생하는 시설을 보유한 사업체의 경우 일괄적으로 산업단지 입주 제한 *금형 및 폐기물 재활용업 등 (건의) 폐수배출량이 배출시설허가(신고) 대상 미만 이고 발생하는 폐수를 적법 업체에 전량 위탁 처리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 규제 완화(입주 허용)	산업부	
8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확대	국가첨단 전략산업법	(현황) 국가전략산업인 시스템반도체 사업 확장을 위해서는 산업기반 시설 및 인프라 등이 적절한 시기에 뒷받침되어야 하나,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적기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건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확대	산업부	
9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수소법	(현황) 우리나라 수소차 보급은 전 세계 1위이나 충전 인프라는 차량 보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이용자 불편 초래 - 수소충전소 부지 확보 어려움, 초기 시설 구축·운영 비용 부담에 따른 민간 참여 제한, 부대시설 업종 제한에 따른 소비자 불편 및 사업자 수익성 악화 등 (건의) 수소차 보급을 위한 각종 인프라 확충 지원 - ①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 가능 지역 확대 및 충전소 내 소비자 편의시설(휴게음식점, 편의점 등) 설치 허용, ②수소충전소 설치·운영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산업부	
10	탄소중립 R&D 및 시설투자 등에 대한 지원 확대	-	(현황) 2030 NDC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노후 시설 교체, 생산공정 개선, 에너지 효율화, R&D 개발 등에 막대한 자본 소요되며, 이를 위해서는 산업계 자체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R&D, 금융·세제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 필요 (건의) 탄소중립 R&D 및 시설투자 등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확대	산업부	핵심 과제

11	중소·중견기업 ESG 경영 지원 강화	-	<p>(현황) 세계적으로 ESG 경영 확산에 따라 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나 중견·중소기업은 인력·자본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대응에 한계. 중견·중소기업의 ESG경영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p> <p>(건의) ①환경안전 등 ESG경영을 위한 시설 투자 시 세제지원 확대, ②중소·중견기업 교육·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마련</p>	산업부	핵심 과제
12	국가전략물자 수출 시 서류작성 및 절차 간소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p>(현황) 국가전략물자를 수출할 경우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나, 복잡한 제출서류, 영업비밀 등 보안사항 포함, 승인통보 시기 불명확 등으로 애로. 이는 고객사와의 신뢰 형성, 해외경쟁사와의 경쟁에도 불리하게 작용</p> <p>(건의) 국가전략물자 관리 프로세스 간소화 및 명확화</p>	산업부	
13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방식 개선	기술이전법	<p>(현황) 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을 이전받을 경우 통상실시(비독점) 원칙에 따라 해당 기술 정보를 공개해야 하므로 경쟁사가 언제든지 확인 가능하여 해당 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추진이 어려운 구조</p> <p>(건의) 통상실시 원칙을 폐지하고 사업화 등 기술 이전 목적 따라 통상 및 전용실시권 부여</p>	산업부	
14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가스히트펌프(GHP)의 배출가스 기준 완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p>(현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품목인 가스 히트펌프(GHP)의 배출가스(Nox, CO) 절감을 위해 농도기준 신설. 그러나 농도기준이 국제적 통용 수준보다 높고 새로운 기준 준수를 위한 대비시간 또한 부족하여 기업에 부담</p> <p>(건의) GHP 배출가스 신설기준 완화 및 단계적 도입</p>	산업부	
15	레미콘 성능중심 규제로 전환	한국산업 표준(KS),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p>(현황) 한국산업표준(KS)은 레미콘 제조 시 사용되는 재료의 종류를 규정하고 기술의 근간이 되는 레시피(배합설계)를 공개하도록 의무화. 이로 인해 레미콘 제조기술 경쟁보다는 단가 경쟁에 집중하게 되어 업계의 저가 수주, 출혈경쟁이 심각</p> <p>(건의) 레미콘 품질 향상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KS 및 관련 업무지침 개정</p>	산업부, 국토부	
16	제조 중견 디지털 전환 지원		<p>(현황) 중견기업 대부분 디지털 전환에 대한 관심이 높고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IT 전문인력 및 투자 자금 부족 등으로 적극 추진하는데 한계. 현행 대다수의 정부 정책 대상도 중소기업으로 한정</p> <p>(건의) 중견기업의 제조경쟁력 확보를 위해 디지털 전환 투자에 대한 세제 및 금융 지원방안 마련</p>	산업부, 기재부	
17	중견기업의 R&D인력 확보 및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p>(현황) 제조 중견기업의 R&D 인력난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경력직의 경우 대기업으로의 이직이 잦고, 대학과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인력을 확보코자 노력하고 있으나 취업 후 단기간 내 이직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 특히 지방 기업의 경우 R&D 신규인력 확보가 더 어려운 상황</p> <p>(건의) 중견기업 R&D 인력 확보 및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소득공제,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등 중견기업 R&D 재직자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p>	산업부	

고용노동부

No.	과제명	관련법령	주요내용	소관부처	비고
1	근로시간제도 개선	근로기준법	<p>(현황) 주52시간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직무별·업종별 특성이 반영하지 않은 채 근로시간을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R&D·신제품 개발 지연, 납기대응 제약 등 기업 경쟁력 약화. 일부 규제가 다소 완화되었으나 도입 요건이 여전히 까다로워 현장에 적용하는 데 한계</p> <p>(건의)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시간제도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6月→1年) 및 도입요건 완화(근로자 대표 서면합의→개별 근로자 합의) -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1月(연구개발업무 3月)→6月) 및 도입요건 완화(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개별 근로자 합의) - 특별연장근로 인가기준 개선(사업장→근로자) 	고용부	핵심 과제
2	노사관계법제 합리적 개선	노동조합법	<p>(현황) 매년 노조 파업이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쟁의행위 시 직장점거 등으로 근로손실과 생산 차질로 인한 기업의 피해 증가</p> <p>(건의) 노사 간 동등한 협력 환경 조성을 위한 노사관계법제 합리적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시 사업장 및 직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제도 형사처벌 규정 폐지, 비종사자 조합원의 사업장내 노조 활동 금지 등 	고용부	핵심 과제
3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마련	중대재해처벌법	<p>(현황)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과도한 처벌 규정으로 기업 경영과 산업현장에 막대한 부담 가중.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과도한 규제로 기업경쟁을 위축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p> <p>(건의) 기업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재해 정의를 “다수의 사망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재해”로 규정 -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전환 -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다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처벌 면제 	고용부	핵심 과제
4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p>(현황) 제조업 기준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기업에 한해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허용. 내국인 채용조차 쉽지 않은 지방소재 중견기업과 근로환경이 열악한 제조 중견기업에 대한 외국인 고용 허가 확대 필요</p> <p>(건의) 지방 소재기업 및 뿌리 기업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p>	고용부	핵심 과제
5	청년내일채움공제 중견기업 참여 허용	청년고용법, 고용보험법 등	<p>(현황)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 및 우수인재 유입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21.9월부터 중견기업은 참여대상에서 제외</p> <p>(건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중견기업 참여 허용</p>	고용부	핵심 과제

6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제한 완화	청년고용법	<p>(현황) 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견·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중견기업의 고임금 부담을 덜어 주고 있으나, 인위적 감원 발생 시 사업 참여를 제한</p> <p>(건의)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위적 감원 제한 완화</p>	고용부	
7	임금체계 개편	근로기준법	<p>(현황) 연공형 임금체계는 공정한 성과 배분을 막고 청년층의 고용 창출을 저해하며 비정규직을 증가시키는 등 노동시장 왜곡 초래 우려</p> <p>(건의) 연공형 임금체계에서 직무나 능력 또는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임금체제로 개편</p>	고용부	핵심 과제
8	안전관리자 선임·전담기준 완화	산업안전보건법	<p>(현황) 제조업 50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2명* 이상 선임 및 겸직 금지(300인 이상부터) 의무가 있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산업안전 규제 강화로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소지자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자격증 소지자는 한정되어 있고, 대부분 대기업으로 집중되어 중소·중견기업은 안전관리자 확보에 어려움</p> <p>*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학위자 중 1명은 반드시 포함</p> <p>(건의) 사업장 안전관리 업무 전문기관 대행 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인정</p>	고용부	

환경부

No.	과제명	관련법령	주요내용	소관부처	비고
1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복규제 개선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오염시설법, 대기관리권역법	<p>(현황)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 강화, '환경오염시설법'상 허가배출기준 적용, '대기관리권역법'상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도입으로 인해 기업부담 급증</p> <p>(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라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허가 면제</p>	환경부	핵심 과제
2	사업장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현실화	대기관리권역법	<p>(현황) 사업장별 배출정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배출허용총량 과소 산정에 따른 할당량 부족, 일부 사업장의 경우 배출허용총량 과소산정에 따른 오염물질 저감설비 투자비용 증가로 인한 어려움 발생</p> <p>(건의)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 현실화</p>	환경부	핵심 과제

3	대기관리권역법상 배출허용총량 추가할당 기준 마련	대기관리 권역법	<p>(현황) 불황 등으로 생산활동이 감소하면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어 배출허용총량을 적게 할당받게 되는데, 이후 업황이 호전되면 생산활동이 늘어나면서 오염물질 배출량도 함께 증가해 당초 할당량 초과분에 대한 과징금을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다음연도 배출허용총량 산정에도 영향. 또한 신·증설 시설은 지역배출허용총량 여유분이 없는 경우 추가 할당이 불가</p> <p>(건의) 업황 변동이나 신·증설 시설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추가할당 기준 마련</p>	환경부	핵심 과제
4	대기오염물질 총량 권역별 이전 거래 허용	대기관리 권역법 시행규칙	<p>(현황) 공장 이전·신설 등 시설투자 확대시 오염물질 총량이 추가로 필요하나 권역별 오염물질 배출 총량이 한정되어 있고, 대기오염물질 총량 거래가 권역 내로 한정되어 있어 신규 투자에 어려움 발생</p> <p>(건의) 대기오염물질 총량 권역별 이전 거래 허용</p>	환경부	
5	통합환경관리 대상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완화	환경오염 시설법 시행규칙, 대기관리 권역법 시행규칙	<p>(현황)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으로 SOx, NOx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기준이 대기환경보전법보다 2배 이상 강화되고, 사업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배출허용 기준에 따른 이행 부담 어려움</p> <p>(건의) 통합환경관리 대상 사업장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완화, 대기총량제 대상 지역 1종·2종 사업장은 농도 특례 130% 적용</p>	환경부	핵심 과제
6	굴뚝원격감시체계(TMS) 활용유예기간 확대	대기환경 보전법	<p>(현황) TMS 설치 이후 기업이 규제이행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나 활용유예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여 기업이 오염물질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관리·조절하는데 어려움</p> <p>(건의) 중·중소기업 TMS 설치 완료 후 활용유예기간 연장(6개월→1년)</p>	환경부	
7	중소·중견기업의 TMS 설치 부담완화	대기환경 보전법, 대기관리 권역법	<p>(현황) 굴뚝 원격 자동측정기기 부착 의무화에 따라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경영 부담 증가 * TMS 설치·운영관리비 지원 : 중소 40%, 중견 없음</p> <p>(건의) 중소·중견기업의 TMS 설치 부담완화(단계적 의무화 및 보조금 지원대상 중견까지 확대),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의 경우 TMS 설치 유예</p>	환경부	
8	TMS 부착 및 운영·관리기준 관련 중복처벌 완화	대기환경 보전법	<p>(현황) 대기오염물질 연간 10톤 이상 발생 1~3종 사업장에 TMS 부착을 의무화하고 부착 및 운영·관리기준 위반 시 행정제재 및 형벌 부과</p> <p>(건의) TMS 미부착 및 운영·관리기준 관련 형벌 규정 폐지</p>	환경부	
9	온실가스 배출 할당 산정방식 개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p>(현황)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대외환경 및 경영환경에 따라 수주물량 취소 등 영업활동 중단이 되거나 회생절차기간 동안 생산활동이 급격히 줄어도 온실가스 기준기간에는 제외되지 않는 문제 발생</p> <p>(건의) 기업회생절차 또는 대내외 경영환경 위축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한 연도는 기준기간 산정에서 제외</p>	환경부	

10	배출권거래제 규제대상에서 간접배출 제외	배출권 거래법 시행령	(현황) 배출권거래 대상을 생산공정상 직접배출 뿐만 아니라 전기·열사용 등에 의한 간접배출도 포함해 규제하는 것은 이중규제에 해당 (건의) 배출거래제 규제대상에서 간접배출 제외	환경부	
11	국외 평가 완료된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자료 인정	화학물질 등록평가법	(현황) 화평법에 따라 기존화학물질(1톤 이상) 등록을 의무화. 국외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개한 유해성 평가 결과가 있는 화학물질은 제출 자료 생략이 가능하나 정부는 해당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등록 자료로 제출하도록 요구 (건의) 국외에서 평가 완료된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는 자료 제출 없이 인정	환경부	
12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록 면제 절차 간소화	화학물질 등록평가법, 화학물질 관리법 등	(현황)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다품목 소량을 수입 또는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품목별로 등록 면제 확인절차 진행에 따른 행정업무 부담 증가 (건의)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면제 절차 간소화	환경부	핵심 과제
13	개발완료 신규화학물질 상용화시 화학물질 사후 등록 허용	화학물질 등록평가법	(현황) 연구개발을 통해 신규화학물질 개발 시 해당연구의 성공 여부나 완료시점을 정확히 예측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당 물질을 신규화학물질로 사전등록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음 (건의) 화학물질 연구개발을 통해 신규화학물질로 상용화할 경우에는 사후 등록을 허용	환경부	
14	화학물질 등록 유예 종료 후 조건부 등록 인정	화학물질 등록평가법	(현황)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경우 화학물질 등록이 의무화되었으며 등록량에 따라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 불가피한 사유로 유예기간 내에 화학물질 등록을 완료하지 못하면 해당 물질 제조·수입 중단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어 기업 부담 증가 (건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존화학물질을 유예 기간 내에 등록이 지연될 경우 사후 등록 허용	환경부	
15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 사고 시나리오 규정 수량 기준 개선	화학물질 관리법	(현황)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도입으로 유해 화학시설의 화학물질 규정 수량 기준이 대폭 낮아져 기준 초과 시마다 반복적으로 인허가를 진행해야 함. 또한, 사고시나리오 규정 수량이 제조·사용시설과 보관·저장시설 구분 없이 일괄 적용되어 화학물질을 소량으로 보관하는 일부 업종의 경우 총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빈번해 인허가를 위한 불필요한 행정업무 가중 (건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사고시나리오 규정 수량 기준 완화	환경부	
16	사업장 안전관리계획서 및 현장점검 규정 일원화	화학물질 관리법	(현황) 기업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 하려는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 안전보고서, '고압가스법'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 등 유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각각 작성·제출해야 함 (건의) 사업장 안전관리계획서 제도 통합 운영	환경부	

17	폐기물 재활용 물질의 화학물질등록 적용 제외	화학물질 등록평가법	(현황) 폐기물 및 재활용 또는 회수한 화학물질에 대한 화학물질등록 적용 여부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산업계 혼란 야기 (건의) 재활용·회수한 물질이 등록 완료된 물질과 동일한 경우 등록면제 확인대상으로 인정	환경부	
18	폐기물 재활용 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폐기물 관리법	(현황)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과 유형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어 폐기물 재활용 한계 (건의) 폐기물 재활용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환경부	핵심 과제
19	순환자원 유가성 기준 개선	자원순환법	(현황) 순환자원인정제도는 경제성 기준을 유가성(有價性)으로 판단하고 있어 수요가 있더라도 무상으로 처리되는 폐기물의 경우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지 못해 폐기물의 재활용을 어렵게 하고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구축 저해 (건의) 순환자원 유가성(有價性) 기준에 비유가성*도 포함하도록 수요성(需要性) 기준으로 개선하고 유가성 기준 구체화	환경부	핵심 과제
20	폐기물 수입신고서 첨부서류로 CIP 수입계약서도 인정	폐기물 국가간 이동법	(현황) '폐지'가 폐기물수출입신고 대상에 포함('20.7월)됨에 따라 제지업계의 물류비용 부담 가중 * 기존 CIF(지정항 목적지까지 운송)에서 CIF(지정항 목적항까지 운송)로 수입계약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지정항구로부터 지정장소까지의 운송비용 추가 부담 (건의) 폐기물 수입신고서 제출시 첨부서류로 CIP 수입계약서도 인정	환경부	
21	소량 배출 지정폐기물 보관기간 완화	폐기물 관리법	(현황) 사업장 지정폐기물 배출은 품목, 성질 및 사업 여건 변화에 따라 배출량이 다르지만 제도상 지정폐기물 배출량 상관없이 45일(일부 지정 폐기물은 60일) 이내 수거해야 함 (건의) 지정폐기물 배출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경우 보관기간 연장 등 탄력적 운영	환경부	
22	환경부 소관 주요 법률 형사처벌 규정 개선	환경오염 시설법, 대기환경 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현황) 환경부 소관 주요 법률 위반시 시정명령·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 제재, 징역형 등 형벌까지 중복 부과 (건의) 환경부 소관 주요 법률 위반 시 인신을 구속하는 징역형 폐지하고 행정제재로 전환	환경부	핵심 과제
23	폐수 유기물 관리지표 업종별 기준 마련	물환경 보전법 시행령	(현황) 폐수배출시설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이 업종별 특성을 고려치 않고 일괄적으로 변경*·강화되어 기업이 준수하기가 어려운 상황 * COD(화학적산소요구량) → TOC(총유기탄소량) 전환에 따라 1일 폐수 허용 배출량 대폭 감소 (건의) 청정지역 등 해당 지역에 업종별 총유기탄소량(TOC) 특례 기준 마련	환경부	
24	생태독성 배출허용 평가시험종 다양화	물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현황) 염에 의한 독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독성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증명해야 함(3년마다 연장심사 실시). 해외 주요국은 생태독성 시험 시 다양한 개체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특정 개체(민물 물벼룩)만 활용하고 있어 애로 (건의) 폐수의 생태독성시험 평가시험종 다양화	환경부	

25	환경규제 행정절차 간소화 및 사업장 현장 점검 개선	-	<p>(현황)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행정기관별 자료 제출 요구로 인해 기업의 행정업무 부담 가중. 행정기관별로 환경규제 이행에 대한 자료를 각각 요구할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물질의 경우 농도와 총량 규제에 따라 관리 기관이 달라 제출하는 서류가 유사함에도 기관별로 이행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 발생</p> <p>(건의) 동일 오염물질 규제 이행서류 통합 제출 및 사업장 점검 시 적발 보다는 개선 중심으로 점검</p>	환경부	핵심 과제
----	------------------------------	---	---	-----	-------

법무부

No.	과제명	관련법령	주요내용	소관부처	비고
1	주주의 의결권 행사 제한 폐지	상법	<p>(현황) 상장회사의 감사(감사위원) 선임·해임, 집중투표 관련 정관변경(자산 2조원 이상) 시 3% 초과 보유주식*에 대해 의결권 제한</p> <p>(건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3% Rule) 폐지</p>		
2	다중대표소송 제기 요건 개선	상법	<p>(현황) 일정비율* 이상 주식을 보유한 모회사 주주의 경우 자회사(모회사가 50% 초과해 출자한 회사) 이사의 대표소송 제기가 가능함에 따라 투기세력 등의 경영간섭으로 경영 부담 가중 우려</p> <p>* 비상장회사 지분 1% 이상, 상장회사 지분 0.5% 이상 + 6월 보유</p> <p>(건의) 다중대표소송제를 전면 폐지하거나, 소송 제기 대상을 모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로 한정</p>		
3	적대적 M&A 방어장치 도입	상법	<p>(현황) 외환위기 이후 경영권 공격수단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 반면, 적대적 M&A 공격시 기업의 방어 수단은 자사주 취득 외에는 없는 실정</p> <p>(건의) 기업이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생산 및 투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차등의결권, 황금주, 포이즌 필, 테뉴어보팅 등 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p>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o.	과제명	관련법령	주요내용	소관부처	비고
1	국가 R&D 지원체계 개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p>(현황) '20년 기준 중견기업 국가 R&D 집행액은 전체 24.2조원 중 1.8조원에 불과. 현행 국가 R&D 지원체계는 중소기업 우선 분배 방식과 불필요한 절차 등 경직적인 관리 관행으로 R&D 성과창출을 저해하고 있음</p> <p>(건의) 성과 중심의 R&D 지원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기술력과 역량을 갖춘 중견기업의 R&D 예산 비중 확대</p>	과기부, 산업부	핵심 과제

2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변경(삭감) 시 사전협의 절차 마련	국가연구 개발혁신법	(현황) 기업은 정부 R&D 과제 협약 체결 이후 세부 연구계획 수립하여 연차별 R&D를 수행하고 있으나, 정부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연구개발비가 급작스럽게 삭감되면 이로 인한 부담과 피해는 기업에 전가될 가능성이 큼 (건의) 협약 체결 이후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삭감이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 절차 마련	과기부, 산업부	
3	공공부문 국산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 확대	소프트웨어 진흥법	(현황) 4차 산업혁명, 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으로 소프트웨어(SW)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시장은 지나친 외산 선호 및 용역구축 서비스(SI) 위주 정책으로 SW산업 성장에 한계. 국내 SW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상용 SW 도입 확대 필요 (건의) 국내 SW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국산 상용 SW 도입 확대 - 공공기관이 국산 SW 도입 시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 대규모 공공 SW 사업 추진 시 중견기업 참여 확대	과기부	

국토교통부

No.	과제명	관련법령	주요내용	소관 부처	비 고
1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폐지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현황) 안전운임제로 인한 물류비용 상승은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려 수출기업의 경쟁력 약화 초래. 안전운임 결정이 경제적 지표(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가 아닌 화주·차주·공익위원의 협상에 의존함에 따라 소모적 논쟁 발생 (건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폐지	국토부	
2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	수도권 정비계획법	(현황) 수도권 집중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공장, 학교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증설 및 용도변경을 총량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여 수도권 내 공장 설립 승인을 받더라도 총량 부족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 발생. 또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 (건의)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	국토부	
3	초소형전기차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제한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현황) 초소형전기차는 자동차관리법령 등에 따라 안전기준을 충족,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은 주행(충돌) 안전성을 우려하며 초소형전기차의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을 제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초소형전기차 시장을 형성하고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투자를 통한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법제도 규제로 인해 관련 산업 성장이 정체된 상태 (건의) 경형 일반차에 준하는 안전장치가 장착된 초소형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허용	국토부	

4	로봇주차장 신기술 도입을 위한 규제개선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현황) 기계식 주차장 출입문, 자동차 입고출고 시간 계산 규정 등이 기존 팔레트 방식 기준만 있어,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AVP 시스템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상황 (건의) 안전기준을 충족한 경우 신기술 적용 제품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등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국토부	
---	-----------------------------	---	--	-----	--

중소벤처기업부

No.	과제명	관련법령	주요내용	소관 부처	비 고
1	적합업종제도 합리화	생계형 적합업종법	(현황)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시행으로 업종전문화로 성장한 중견기업의 성장 제한 및 중복과잉규제로 인한 영업활동 침해 문제 발생 (건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폐지 및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합리화 - 생계형 적합업종 보호대상을 소상공인으로 한정 하고 졸업제 도입 - 업종전문화 중견기업 규제대상에서 제외	중기부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합리적 개선	판로지원법	(현황) 조달시장에서 특정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여 대·중견기업의 입찰참여를 제한. 이는 중소기업 보호·육성하기 위한 제도이나 오히려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저해. 또한, 신산업 품목 지정 확대로 기술혁신 및 신산업 투자 유인을 감소시키고 산업 발전을 저해 (건의) ①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졸업제 도입, ②업종전문화를 통해 중소→중견으로 성장한 기업은 조달시장 참여 허용, ③신산업 품목 지정 시 일정 비율 중견기업의 참여 허용	중기부	
3	중견기업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신청자격 조건 완화	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	(현황) 장기간(업력 45년 이상) 건실하게 기업을 운영하여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을 명문장수기업 으로 선정하고 있으나, 중견기업의 경우 상출집단 소속기업과의 거래비중이 매출액의 10% 이상일 경우 신청 제한 (건의) 상출집단소속기업과의 거래비중 기준 폐지	중기부	

금융위원회

No.	과제명	관련법령	주요내용	소관 부처	비 고
1	중견기업 금융지원 강화	-	(현황) 코로나19 장기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실적저조→신용등급 하락→여신한도 축소→자금 상환 압박 및 신규대출 기피' 현상이 지속되며 중견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 정부 금융정책은 대부분 중소·벤처기업에 집중되어 있어 정책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건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견기업의 대출 만기연장 및 한도 확대	금융위	

2	중견기업 신용보증한도 확대	신용보증 기금법	<p>(현황) 중견기업은 신용을 바탕으로 한 직접금융 보다는 은행대출 등 간접금융 비중이 높으며, 대다수의 중견기업이 보증한도까지 담보를 제공하고 있어 추가 담보 대출 여력이 없는 상황. 담보 능력이 취약한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신용보증 제도가 있으나 중견기업은 신규 보증이 어렵고 한도도 최대 30억원에 불과하여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p> <p>(건의) 중견기업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 제도 개선 - 중견기업의 신용보증한도 상향(30억원 → 300억원) - 중견기업 보증을 위한 5천억원 규모의 전용 자원 조성</p>	금융위	
3	해외 투자자산에 대한 담보 인정 등 해외투자 자금 지원	-	<p>(현황) 중견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거래선 다변화에 맞는 해외투자가 필수적이나 금융기관에서 해외 자산에 대한 담보를 인정하지 않아 자금조달이 어려움</p> <p>(건의) 해외투자자산에 대한 담보인정</p>	금융위	
4	외부감사법상 제도 개선	외부감사법	<p>(현황) 외부감사법 전면 개정('18.11월)으로 감사인 지정제와 표준감사시간제 등이 도입됨. 정부의 감사인 지정은 과도한 정부개입으로 계약자유 원칙을 침해하며, 표준감사시간 결정 권한을 한국 공인회계사에 일임하는 것은 권한남용 소지가 있고 감사비용 상승에 다른 기업경영 부담 가중 우려가 큼</p> <p>(건의) 감사인 지정제를 폐지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되 일정기간 후 의무적으로 교체하도록 제도 개선</p>	금융위	

공정거래위원회

No.	과제명	관련법령	주요내용	소관 부처	비 고
1	지주회사 규제 완화	공정거래법	<p>(현황)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억제에 위해 지주회사 설립요건 및 지분율 요건을 강화 하고 있으나, 이는 그간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해온 정책과 배치되며 중소·중견기업의 자발적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저해하는 역차별 규제</p> <p>(건의) ①자발적 지주회사 설립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산기준 완화, ②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 하향(상장 30%→20% 비상장 50%→40%)</p>	공정위	
2	내부거래 규제 완화	공정거래법	<p>(현황) 공정위는 사익편취 방지를 위해 내부거래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계열사 간 내부거래 규제는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세법 및 상법 등에서 다양하게 다뤄지고 있어 내부 거래에 대한 중복규제 및 규제강화로 인해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p> <p>(건의) ①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가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 ②내부거래 규제 대상 요건 완화*</p> <p>*계열사 지분요건 상향 상장 20% → 30%, 지주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규제 대상에서 제외</p>	공정위	

3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 완화	공정거래법	<p>(현황) 공시기업집단은 5% 이상 계열사 간 거래 시 거래내역 등을 공시해야하나 단순 행정실수(임원 변동사항 누락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청구됨. 또한 대규모 내부거래 신고사항 중 상품용역 거래의 경우 분기별 예상 공시를 해야 되는데, 신고 시점이 분기말(2분기말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어, 예상 매출 오차가 20% 넘는 경우가 많음. 통상적으로 월말에 전표를 많이 처리하기 때문에 월말 거래 내역을 제외한 예상 수치는 오차가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 매번 변경공시(이사회 필요)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 발생</p> <p>(건의) ①오기 등 단순 실수의 경우 시정조치로 변경, ②상품용역거래 신고기일 유연화(분기말+3일까지)</p>	공정위	
---	----------------------	-------	---	-----	--

조달청

No.	과제명	관련법령	주요내용	소관 부처	비 고
1	혁신제품 시범구매 대상 확대	조달사업법,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p>(현황) 조달청은 상용화 전 혁신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정부·공공기관에 공급하는 시범구매 사업을 운영 중이나 중견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은 시범구매 대상에서 제외</p> <p>(건의) 혁신제품 시범구매 대상을 전체 중견기업 또는 매출액 3천억 미만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p>	조달청	
2	상용SW 제3자단가계약 중견기업까지 포함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 계약 업무처리 기준	<p>(현황) 상용SW 업무처리기준 개정(21.12월)으로 '24년부터 중견기업 제품은 제3자단가계약에서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전환 예정. MAS 방식의 계약 특성상 외산 SW기업과의 가격 출혈경쟁으로 국내 상용 SW경쟁력 약화 우려</p> <p>(건의) ①가격 경쟁이 아닌 상용SW 특성에 맞는 선정기준 마련, ②초기 중견기업의 경우 제3자단가 계약 대상에 포함</p>	조달청	
3	신기술 보유 SW기업 대상 적격심사 기준 개선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p>(현황) 디지털 신기술 기반 SW에 대한 공공 수요가 확대되고 있지만 기존 SW기업 적격심사 기준은 '최근 5년간 동등 이상 이행 실적' 등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 요구</p> <p>(건의) 신기술 보유 SW기업에 대한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선</p>	조달청	
4	공공조달 카탈로그 계약 종합평가기준 개선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 규정	<p>(현황) 임대서비스 등 사후관리가 필수적인 용역 계약자 선정 시 '서비스 수행능력', '사후관리 평가' 항목이 중요하나 선택 항목으로 되어 있어 서비스 능력에 대한 적절한 평가기준이 미흡하고 동점자 발생 시 고용우수기업 가점*이 최종 당락을 좌우하는 상황. 이에 따라 서비스 질 저하 및 경쟁력이 낮은 기업이 선정되는 역효과 발생</p> <p>*직전년도 대비 전체 고용 3~5% 증가 시 가점 1점 → 종사자 수가 작은 기업일수록 달성하기 용이함</p> <p>(건의) 임대서비스 용역 선정 기준 개선</p>	조달청	

5	공공조달 임대서비스 중견기업 참여 허용	-	(현황) 조달시장 종합쇼핑몰에 공기순환기 임대 서비스 상품이 출시되었으나 '공기순환기' 품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신청자격을 중소기업으로 제한 (건의) 공공조달 임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중견기업 참여 허용	조달청	
6	공공기관 ESS사업 입찰 신청자격 기준 완화	-	(현황) 공공 ESS 사업은 발주물량의 30% 이상의 실적 요구 등 참가 자격 요건이 높아 대부분 대기업만 참여 가능한 상황 (건의) 기술력이 있는 중견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조건 완화 또는 낙찰자 선정방식 변경* *예 : 해당 연도 내 여러 프로젝트 발주 시 동시 낙찰자 배제	조달청	

기 타

No.	과제명	관련법령	주요내용	소관부처	비고
1	의약품 간접수출 규제 완화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현황) 수출 목적으로 제조한 의약품은 국가출하 승인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중간 무역업체와의 거래를 통한 수출(간접수출)인 경우 국내 판매로 해석하여 행정처분함 (건의) 국내 제조업체가 전문 무역상사를 통해 수출하거나 내국신용장(Local L/C) 및 구매확인서 등에 의해 공급이 확인된 경우 국내판매가 아닌 수출(간접수출)로 인정하고, 국가출하승인 위반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	식약처	
2	집단급식소 운영사업장 영양사 고용의무 애로 해소	식품위생법	(현황) 식품위생법상 급식인원 100명 초과 산업체는 영양사를 의무고용 하도록 규정. 근무시간 외(야간) 급식은 영양사 지도 관리하에 관리책임자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노조에서 영양사 부재 사유로 사업주를 고소하는 사례 발생 (건의) 산업체 집단급식소 영양사 근무시간 외 집단급식소 관리 등에 대한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지방고용노동청 등 관계기관에 공문 시달	식약처	
3	채석 완료지의 산림 복구비 현실화	산지관리법	(현황) 정부는 채석 완료지의 산림 복구비를 매년 결정·고시하고 있으나 최근 물가상승률을 뛰어넘는 비현실적인 인상폭 조정으로 기업부담 가중 *17~21 연평균 물가상승률 1.1%, 복구비 기준금액 인상률 9.9% (건의) 복구비 산정시 합리적 이해와 예측이 가능하도록 물가상승률 적용 등 객관적 지표 활용	산림청	
4	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의 중견기업 참여 허용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현황) 국내 방위사업의 경우 중견기업 참여가 제한됨. 기술과 역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불합리. 기술 개발 난이도가 높고 사후관리가 필수적인 품목의 경우 중소기업만으로는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유찰되는 사례도 빈번함 (건의) 국가 방위에 중요한 부품국산화 개발 사업 등의 경우 중견기업 참여 허용	방위청	